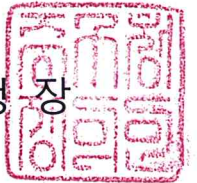
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
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
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
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
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 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기존 조례상의 「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」 조항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으로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며 화장실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민간개방화장실의 비상벨 시스템 구축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3조 「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」을 「관리운영비 등의 지원」으로 변경
 - [변경전] 「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」 "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·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"를
 - [변경후] 「관리운영비 등의 지원」 "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·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·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"로 변경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문의전화 : 3396-5472, FAX : 3396-8756, 메일 : ysun7570@junggu.seoul.kr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**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「편의·위생용품의 지원」 “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·위생용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”를 「관리운영비 등의 지원」 “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·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·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(편의 · 위생용품의 지원)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·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(관리운영비 등의 지원) <u>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·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· 위생용품비 및 비상알림장치 설치 · 유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